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4
----------	-------

발의연월일 : 2022. 1. 13.

발 의 자 : 배현진 · 김성원 · 김형동
백종헌 · 조명희 · 주호영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홍준표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달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과 목소리 등을 활용한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영상물 등을 접한 이용자는 해당 영상물 등이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렵고, 해당 영상물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유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상물등’ 또는 ‘편집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등을 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등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
7제1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 유통된 경우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특정한 코드 또는 부호를 삽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거짓의 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삭제등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u>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 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 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② ~ ⑥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여</u> ----- ----- ----- ----- ----- ----- ----- 1. <u>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u> <u>이 발생한 경우</u> 2. <u>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u> <u>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u> <u>영상 등의 정보로서 요청자</u> <u>의 의사에 반하여 생성되거나</u> <u>유통된 경우</u>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u><신설></u>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임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특정한 코드 또는 부호를 삽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않은 정보</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벌칙)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 아니한 정보를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 7. (생략) ② (생략)	